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2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771명에서 18,144명으로 373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인력 증원 : 345명

- 일반직 : 5급 이하 333명

- 연구직 : 연구관 2명, 연구사 10명 / 총 12명

나. 소방서 세곡119센터 신설에 따른 총원 : 28명

- 소방공무원 : 소방령 이하 28명

구분	정원 총계	일반직			연구직			소방공무원		
		소계	4급 이상	5급 이하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이하
현행	17,771	9,909	293	9,616	358	57	301	6,951	35	6,916
조정	18,144	10,242	293	9,949	370	59	311	6,979	35	6,944
증감	+373	+333	-	+333	+12	+2	+10	+28	-	+28

※ 정원 총계는 정무직, 별정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을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합의하였음(비용추계서 참고)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 강화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 10. 12. ~ 10. 16.)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771”을 “18,144”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872”를 “10,217”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6,951”을 “6,979”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771”을 “18,144”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909”를 “10,242”로 한다.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519”를 “9,852”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58”을 “370”으로 한다.

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59	5		32	22	
-----	----	---	--	----	----	--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301”을 “311”로 한다.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6,951”을 “6,979”로 한다.

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916”을 “6,94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7,771</u>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9,872</u>명</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u>6,951</u>명</p> <p>3.~5. (생략)</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18,144</u> -----</p> <p>-----.</p> <p>1. -----</p> <p>-----</p> <p><u>10,217</u> --</p> <p>2. -----</p> <p>----- <u>6,979</u> --</p> <p>3.~5.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처</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u>17,771</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u>9,909</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3</td> <td>18</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7</td> <td>7</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31</td> <td>139</td> <td>16</td> <td>7</td> <td>65</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u>9,519</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9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u>17,771</u>						정무직계	2						일반직계	<u>9,909</u>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u>9,519</u>						전문경력관 소계	9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처</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u>18,144</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u>10,242</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3</td> <td>18</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7</td> <td>7</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31</td> <td>139</td> <td>16</td> <td>7</td> <td>65</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u>9,852</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9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u>18,144</u>						정무직계	2						일반직계	<u>10,242</u>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u>9,852</u>						전문경력관 소계	97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u>17,771</u>																																																																																																																																																																								
정무직계	2																																																																																																																																																																								
일반직계	<u>9,909</u>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u>9,519</u>																																																																																																																																																																								
전문경력관 소계	97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u>18,144</u>																																																																																																																																																																								
정무직계	2																																																																																																																																																																								
일반직계	<u>10,242</u>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u>9,852</u>																																																																																																																																																																								
전문경력관 소계	97																																																																																																																																																																								

현행							개정안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별정직 계	29						별정직 계	29					
연구직 계	358						연구직 계	370					
연구관	57	3		32	22		연구관	59	5		32	22	
연구사	301						연구사	311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6,951						소방공무원 계	6,979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916						소방령 이하 계	6,944					
교육공무원 계	498						교육공무원 계	49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771명에서 18,144명으로 총 373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
(일반직 +333명, 소방공무원 +28명, 연구직 +12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인건비	29,300,011	30,325,511	31,386,904	32,485,446	33,622,437	157,120,309
	소계(b)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29,300,011	30,325,511	31,386,904	32,485,446	33,622,437	157,120,309

※ 매년 인건비 상승률 3.5%('17년 기준) 적용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29,300,011	30,325,511	31,386,904	32,485,446	33,622,437	157,120,309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9,300,011	30,325,511	31,386,904	32,485,446	33,622,437	157,120,309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373명

○ 일반직 : +333명

- 5급 +24, 6급 +148, 7급 +155, 8급 +5, 9급 +1

○ 소방공무원 : +28명

- 소방경 +1, 소방위 +3, 소방장 +5, 소방교 +9, 소방사 +10

○ 연구직 : +12명

- 연구관 +2, 연구사 +10

2. 비용소요 추계 : 28,309,18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합계	28,309,189	<p>◆ 총계 : +28,309,189</p> <p>○ 일반직(+333명) : +25,452,396</p> <p>▷ 5급(+24) : 98,263×24명 = 2,358,312</p> <p>▷ 6급(+148) : 82,436×148명 = 12,200,528</p> <p>▷ 7급(+155) : 68,147×155명 = 10,562,785</p> <p>▷ 8급(+5) : 57,476 × 5명 = 287,380</p> <p>▷ 9급(+1) : 43,391 × 1명 = 43,391</p> <p>○ 소방공무원(+28) : +1,913,597</p> <p>▷ 소방경(+1) : 99,150 × 1명 = 99,150</p> <p>▷ 소방위(+3) : 92,043 × 3명 = 276,129</p> <p>▷ 소방장(+5) : 81,296 × 5명 = 406,480</p> <p>▷ 소방교(+9) : 64,372 × 9명 = 579,348</p> <p>▷ 소방사(+10) : 55,249 × 10명 = 552,490</p> <p>○ 연구직(+12) : +943,196</p> <p>- 연구관(+2) : 113,988 × 2명 = 227,976</p> <p>- 연구사(+10) : 71,522 × 10명 = 715,220</p>	'17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